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설립자)은 전기 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8. 12. 18. 「학원법」상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육부령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생략)	제3조(등록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1. ~ 3. (생략) <신설> 제5조(조건부설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생략)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조건부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2.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4. (생략)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1.·2. (현행과 같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의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 ----- ----- ----- ----- ----- -----. <삭제> 3.·4. (현행과 같음) ② -----
--	---	--	---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⑦ (생 략)

-- 다음 각 호를 --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설립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학원 시설평면도 1부 3.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설립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교습비등		
	시설·설비계획	붙임: 시설·설비계획서와 같음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학원 시설평면도 1부 3.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시설·설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1.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2. 신청내용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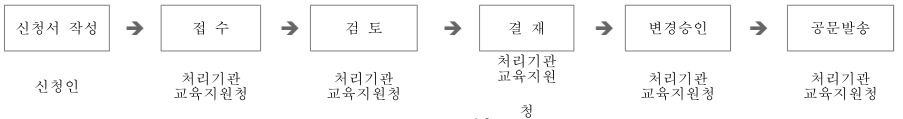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주요 경력	직업	
교습소명			
교습장소			
교습과목		1명당 월 교습비 등	
부제 횟수		전화번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e-mail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치 (전화번호:)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앞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12. 18.>
- 수수료: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1. 신고인 정보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연락처:	)	
	(전자우편:	)	
학력 및 전공	(전자우편:		)
자격			
경력			

2. 신고내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교습장소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검토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결재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신고증명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 12. 18.>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번호		
항목	기존 신고사항	변경사항	변경 사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